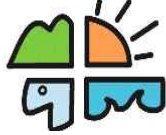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74호 2016년 1월 29일(금)

공 고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14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5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7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4. 12. 04.)으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및 운영 수탁자 의무 등(안 제4조~제7조)
-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안 제9조)
-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차마의 출입, 불꽃놀이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안 제17조 ~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02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관광과(전화 : 033-639-2027, FAX : 033-639-238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033-639-2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관리·운영 수탁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국민여가캠핑장"이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63-10번지에 위치한 캠핑장을 말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 시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자의 범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해수욕장(이하 “해당 해수욕장”이라 한다)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속초시 해수욕장협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위탁관리·운영업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운영업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시설 운영·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2.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감면 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만 7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아닌 어린이

제13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국민여가캠핑장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환불규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불꽃놀이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시장이 허가한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제의 의결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결정
3.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청취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2.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3. 강원지방기상청장
4. 속초소방서장
5. 속초시보건소장
6. 속초경찰서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해변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샤 위 장	어 른	1회	2,000	
	군인, 청소년	1회	1,500	
	어린이	1회	1,000	
물 품 보 관 소	보관용 물품	1일	2,000	
파 라 솔		1개 / 1회	10,000	
튜 브	대형	1개 / 1회	10,000	
	중형		7,000	
	소형		5,000	
주 차 장	이륜차	당일(8시간)	1,000	
		체류(8시간~24시간)	2,000	
	경 차	당일(8시간)	1,500	
		체류(8시간~24시간)	3,000	
	승용차, 소형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당일(8시간)	3,000	
		체류(8시간~24시간)	6,000	
	중·대형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초과 화물차)	당일(8시간)	6,000	
		체류(8시간~24시간)	12,000	
국민여가 캠 핑 장	제1캠핑장 (오토캠핑장)	1개소/1일/1차량	성수기	비수기
			40,000	30,000
	제2캠핑장	1개소/1일	20,000	
	제2캠핑장 야영장 소형(5인이하) 중형(6~10인미만) 대형(10인이상)	1일	4,000	6,000 8,000

<비 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어른 : 만 19세 이상의 사람

나. 군인 : 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한 사람으로 단기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 근무요원 포함)

다. 청소년 :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라.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사람

마. 성수기 : 여름 피서철(7.1~8.31), 단풍철(10.1~10.30)

바.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2. 제1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국민여가캠핑장 환불규정

1. 성수기 환불규정

구 분	계약체결당일 취소 또는 10일전 취소	7일전 취소	5일전 취소	3일전 취소	1일전 취소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주 중	100% 환불	90% 환불	70% 환불	50% 환불	20% 환불
주 말	100% 환불	80% 환불	60% 환불	40% 환불	10% 환불

2. 비수기 환불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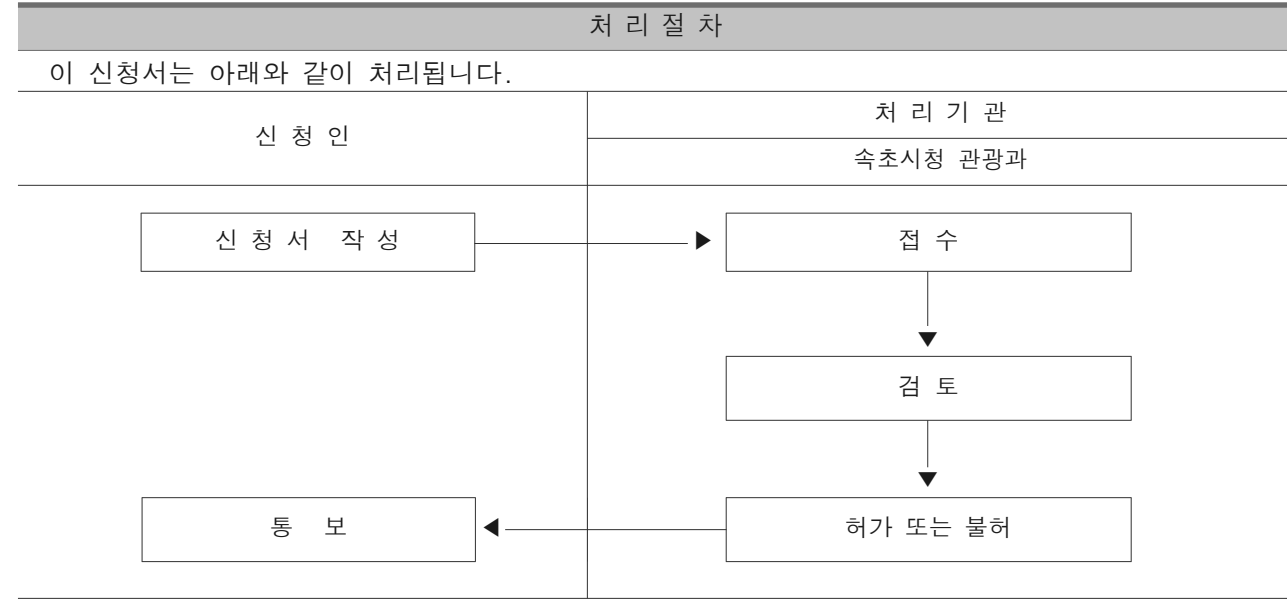
구 분	2일전 취소	1일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주 중	100% 환불	90% 환불	80% 환불
주 말	100% 환불	80% 환불	70% 환불

(별지 제1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제15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사용장소			
사용수량		개	
사용인원			
목적			
사용기간			
사용조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제15조 관련)

제 호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

○ 성 명 :

○ 주 소 :

○ 수 량 :

○ 인 원 :

○ 연 락 처 :

○ 사용장소 :

○ 사용기간 : . . .부터 . . .까지

○ 조 건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속초시 공고 제2016-49호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6.

속 초 시 장

1. 사 업 량: 신축 단독주택 3동(연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2. 사업대상자

○ 읍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농촌주민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용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1주택 보유자가 농촌 주택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3. 대상지역 : 생산·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함

4.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

5. 대출금리 :

가. 고정금리 : 연리2.0%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대출금 상환 중에 금리체계 변경 불가)

6.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중 선택가능

7. 제재사항 : 읍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 시 대상자 선정취소 및 읍자금 지원취소

8. 신청장소 :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9. 신청기간 : 2016. 1. 26. ~ 2016. 2. 19.

10. 기타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 건축디자인과(☎639-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속 초 시 장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 2016. 1. 29. ~ 2. 23. (25일간)

라.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916	임	274	28	중도문2리 새마을 협의회	속초시 도문동 917-2번지 단독주택 2016-건축디자인과 -신축허가-제5호 (2016. 1. 22.)	건축주 : 정수옥, 김규성

마.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바. 관계도서 :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사. 문의사항 :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033-639-2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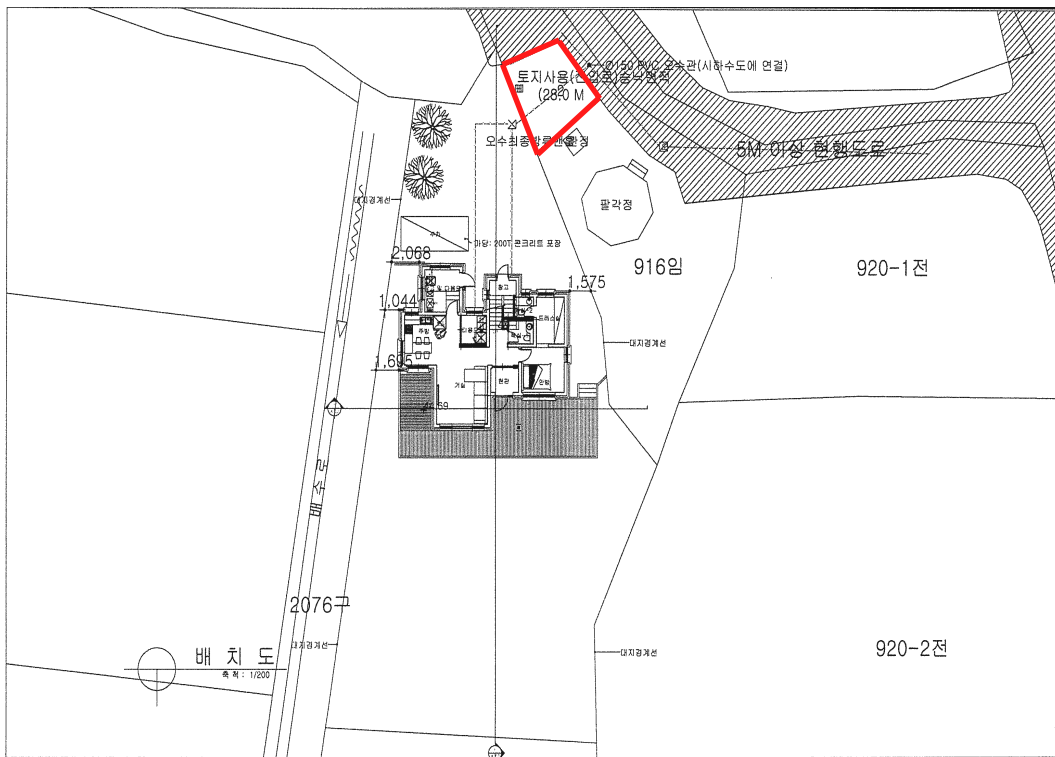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 치 도

축 척 NONE



현 황 도

축 척 NONE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 도입과 회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6조)

나. 도서관의 이용제한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다. 대여료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라. 장난감 대여기간 및 이용횟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마. 도서관 이용시간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도서관 개관시간 : 09:00 ~ 18:00

- 도서관 휴관일

·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1월1일과 설·추석 연휴 기간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

관)

·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바. 장난감 기증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811/속초시 조양로 89(조양동 시립도서관1층),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639-3716, FAX: 033-631-7223)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도서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및 도서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도서 등이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대여기간 등) ① 장난감 대여기간은 1회에 14일 이내로 한다.

② 장난감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로 하며,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기간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11조(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장난감 등의 기부를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